

## Online Series

2024. 01. 18. | CO 24-09

#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필요성과 의미

이 규 창(인권연구실장)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왜 필요하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미 구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에는 어떤 일(행사)들을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되어야 하는가?

### 민족 개념을 고리로 하는 북한인권 개선과 평화통일의 통로

첫째, 대북·통일정책 측면에서 민족 개념을 고리로 하는 북한인권 개선과 평화통일의 통로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북한 노동당은 2023년 12월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선언함으로써 동족 개념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포기하였다.<sup>1)</sup> 이후 김정은은 2024년 1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북한 헌법상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헌법 개정과 함께 ‘동족·동질관계로서의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는 과거의 잔재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sup>2)</sup>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해

1) 『조선중앙통신』, 2023.12.31.

2) 『조선중앙통신』, 2024.1.16.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및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김정은의 지시가 헌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칭 ‘적대언어사용금지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남관계에 있어서의 김정은의 강경한 태도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사형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 새로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법규에도 사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의 동족 개념 부인과 두 국가관계 선언 및 통일 포기 선언으로 북한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지도자가 지시한다고 하여도, 또한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 통제와 처벌,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여도 수천 년 이어져 온 동족 개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에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여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키고 열악하고 참혹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기억하는 행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되어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하여야 한다.

### 해외 탈북민 보호 책무 이행과 남북한 특수관계 국제사회 확산

둘째, 국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해외 탈북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 이행과 이를 통해 남북한 특수관계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의미가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이 탈북 감시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탈북민 수가 급감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면인식 기술 발전과 반(反)간첩법 시행으로<sup>3)</sup> 중국 내에서의 탈북민 이동이 매우 힘들게 되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서 단속된 탈북민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계기로 해외 탈북민들의 인권 상황을 기억하고 국제사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들을 기획, 전개하여야 한다. 그것이 탈북민에 대한 연고권을 강조하여 중국을 상대로 국제규범인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중국 체류 탈북민에 대한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3) 2023년 4월 26일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반간첩법은 국가안보기관 실무자의 외국인에 대한 신분증 확인 및 소지품 검사(제24조),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의 전자기기·시설·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 조사와 봉쇄 및 압수 수색(제25조), 관련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수거(제26조),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환을 회피한 사람의 강제소환 및 탐문 진행(제27조), 간첩 행위 혐의가 있는 사람·물품·장소에 대한 조사 진행(제2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반간첩법을 위반한 경우 출국 명령 및 본국으로의 강제송환에 처해질 수 있다(제66조).

강화할 수 있다.

해외 탈북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고 통일을 포기한 북한과 달리 우리는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가 아닌 특수관계이며,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선과 국민통합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국내적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은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59호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25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쳤다. 1년에 한 번꼴로 개정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제도적 미비점을 찾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제도적인 문제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및 북방한계선(NLL) 불인정 발표를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도발행위로 간주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도전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되어야 한다. 먼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국민인식이 개선되어야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심리적·정서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온전히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포용되어야 북한 주민들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대남친화력이 제고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날 선정 기준: 통일·통합과 북한인권 개선 상징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어떤 날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적합할까?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당사자들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 반영될 필요가 있다. 2023년 이산가족의 날을 선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인 이산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석 전전(前前)날인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통일·통합과 북한인권 개선 상징이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고 이들도 우리와 같은 자유와 인권, 번영을 누려야 하는 주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2월 5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인구는 증감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둘째, 남북이 통일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는 북한과 달리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점,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에 있는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 1일(둘이 하나가 됨)이 적정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12월에 채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2월 21일을 대안으로 할 수도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는 제3국에 있는 탈북민도 포함된다라는 점, 평화통일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31일(셋이 하나가 됨)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8월에 해방되었지만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위해 8월 31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